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등을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경력(자격)종목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신승용	'72.11.04.	경기도	토목산업기사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경명호	'77.06.01.	경기도	전산응용 토목제도기능사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김도형	'74.03.31.	경기도	토목산업기사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차기엽	'64.03.16.	경기도	조적기능사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2.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8] 등

3.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송달일)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방법

-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02-2110-67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